

제29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
【2022. 9. 20.(화) 10:00】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검 토 보 고 서

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운영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 서

2022년 9월 20일
전문위원 권 오 속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2 - 69
- 나. 발 의 자: 한상욱 의원 외 13명
- 다. 발의일자: 2022년 8월 22일
- 라. 회부일자: 2022년 9월 5일

2. 제안이유

현행 규칙 제27조제3항의 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의원으로 하여금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사후 조치계획이나 조치결과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의장이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7조제3항)

4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본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요구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원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제37조(5분 자유발언) 제3항 ‘발언 내용에 따른 의결이나 답변 또는 이행 등을 하지 않아도 된다’ 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‘의장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 요구할 수 있다’ 라는 규정을 신설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요구 할 수 있도록 규칙상에 명문화한 것으로
- 5분 자유발언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할 수 있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강서구정 및 현안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한 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